2021년도 제3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자: 2021. 11. 12.(금)

o 방　　법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

- 심의위원: 권헌영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, 임형주, 홍지만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・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・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1건(안건번호 제2021-156692호~제2021-156741호)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순번 제2021-156692호~156741호 ◉◉◉◉◉ 사이트의 영화 비보의 살아있는 모험 등 상기의 게시물 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모두 가결 의견임

- B 위원: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. 모두 가결 처리함이 상당합니다.

- C 위원: 순번 1~50건의 각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. 다만,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로 충분할 것임.

- D 위원: 순번 1번 ~ 50번 {'◇ ◇ ◇ ◇' 사이트의 '(영화)아미 오브 더 데드: 도둑들(2021)' 등 51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- E 위원: 순번 1번~50번, 51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

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1년 제32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1. 12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

위원 임형주

위원 홍지만